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의 2022년 8월 23일자
신청서에 대한 추가 및 보완 자료

1.0 서론

2022년 8월 23일,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DKRG의 메인 신청서와 더불어 덴마크 입양인 신청서 51건도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3일 DKRG는 덴마크,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지역 입양인들의 신청서 232건을 추가 제출했습니다.

DKRG가 제출한 메인 신청서에 더해, 지금까지 세계 각지의 입양인들이 제출한 신청서는 283건에 달합니다.

DKRG의 신청 요지는 입양의 여러 부문과 세계 각지의 입양인들이 제출한 조사 신청서 283건에 기술된 사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1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의 메인 신청서에 대한 보완서

DKRG는 8월 23일과 9월 13일 신청서 제출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에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여러 정황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DKRG는 기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동 보완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해당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추가적인 사건 제출 및 사건 기술

다수 입양인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신청서는 동 보완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양인 중 한 명이 신청서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존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3 사례 유형의 구체적인 보완

진실화해위원회는 신필식 박사를 통해 DKRG에 전체 케이스에 대해 한국어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서술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4 입양인들의 사용언어 및 공용어로서의 영어 사용

DKRG는 이 조사 신청에 참여하는 입양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정중하게 알려드립니다. 참여 입양인들은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미국의 해외 입양인들입니다.

입양인들은 덴마크어, 독어, 플라망어, 프랑스어, 노르웨이어,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여러 언어권에 퍼져 있는 해외 한인입양인이기에 DKRG는 영어를 각종 양식과 참고 자료상의 공용어로 정하였습니다. 첫째, 영어는 국제 단체와 기업에서 통용되는 언어이며, 둘째 이번 사안과 같이 국경을 넘어 여러 언어권에 걸친 국제적인 성격의 케이스에서 영어가 공용어로서의 인정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입양인들의 사안이 심각한 만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하여 주시고, 해외 입양인이 한국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사건 기술이 영어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입양인 다수가 자신이 겪은 끔찍하고 힘든 경험들을 영어로 어렵게 기술했다는 점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들 입양인은 자신의 제1언어가 아닌 언어(영어)로 기술을 하기 위해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권위주의 시대에 한국 입양기관과 한국 정부 당국이 작성한 서류 다수는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 입양기관과 국가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인 해외 입양인들이 이들 문서를 번역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와 문서는 원래의 형태, 즉 입양인, 해외 입양 수요자, 해외 정부 당국이 과거 당시에 받았던 것과 동일한 형태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DKRG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언어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님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2.0 UN 공동선언문

2022년 9월 29일 UN은 다음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UN 인권 전문가는 금일 “불법적인 국가간 입양은 아동의 납치, 아동의 판매 또는 인신매매 금지, 강제 실종 금지를 위반한다”고 밝히며 국가가 이러한 불법 관행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국가간 입양이 발생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모든 아동의 권리 등 여러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삶과 권리에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제법에 규정된 특정 조건에서는, 불법적인 국가간 입양이 대량학살이나 반인륜적 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동 성명서는 자신의 입양 과정에서 모순이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입양 사유 등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입양인이 늘어감에 따라 불법적인 국가간 입양 문제가 여러 국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발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국가가 입양 절차에 관한 법률, 정책, 기타 필요한 조치를 공표하고 시행함으로써 불법적인 국가간 입양을 방지할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입양 케이스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각 국은 특히 어린이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견해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국가간 입양 결정에 관한 모든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합당한 비중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각 국은 국가 간 입양 시 관련 당사자 혹은 중개인들이 부적절한 재정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 전문가는 “기여 및 기부가 입양 절차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입양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부패는 형사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각 국이 불법적인 국가간 입양을 형법 상의 계속범으로 금지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책임자를 적절한 제재로 형사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각 국은 아동의 강제 실종 또는 이와 관련한 탈취는 아동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임을 고려하여 가장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불법적인 국가간 입양 관련 혐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모든 관련자의 책임을 판단하고, 피해자들의 출신 찾기를 돕고, 적절한 배상 조치를 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국가는 과거에 입양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들이 자신의 출신을 아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국은 불법 국가 간 입양 피해자의 신원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아동 탈취, 강제 실종, 또는 신분 조작 등 신고된 모든 사례에 대한 유전자 샘플을 포함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

“불법 입양의 피해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2022년 9월 29일 제네바)

UN 공동성명서 전문은 Appendix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의 성명서는 DKRG의 입양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청을 뒷받침합니다. 즉,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DKRG만이 아닙니다. UN도 입양에 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DKRG는 입양인의 출신 및 정확한 입양 문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UN은 진실 규명의 중요성과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 함이 입양인들에게 미치는 끔찍한 결과와 여파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UN은 공동선언문에서 “국제법에 규정된 특정 조건에서는, 불법적인 국가간 입양은 대량학살이나 반인륜적 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국제법적 관점에서 볼 때 불법적인 국가간 입양이 심각한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DKRG는 진실화해위원회가 UN공동선언문이 국제법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해외입양이 매우 중대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천명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 선언문을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UN공동선언문이 Appendix 1 첨부했습니다)..

3.0 권위주의 시대 해외 입양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DKRG는 그 동안 권위주의시대 한국 국가의 역할을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DKRG는 해당 시기의 입양에 대해 조예가 깊은 여러 한국 연구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DKRG는 해외 입양의 시작점이기도 한국 전후시대 이후의 “사회정화” 정부 사업에 대해 거듭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입양기관은 한국아동양호회(CPS)입니다. 당초 CPS는 이후의 입양 기관들과 같은 개념의 입양 기관은 아니었습니다. CPS는 1954년 1월 20일에 설립되어 사회복지회(SWS)를 거쳐 현재 대한사회복지회(KWS)로 불리고 있습니다.

CPS는 보건사회부 산하에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 지시를 직접 받는 정부 단체임을 의미합니다.

CPS(후일 SWS를 거쳐 KWS로 명칭 변경) 연감 『나눔 그 아름다운 삶: 대한사회복지회50년사』(영문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고아 보호소’ 설립을 지시했다. 내각은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돕고자 했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단일민족의 단일국가’라는 개인적 신념이 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인용, p17, 『나눔, 그 아름다운 삶: 대한사회복지회50년사』).

『나눔, 그 아름다운 삶: 대한사회복지회50년사』에 따르면 “원래 목표는 ‘혼혈’ 아동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아이들이 한국 특유의 단일민족 사회에서 잘 지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인용, p.17, 나눔, 『나눔, 그 아름다운 삶: 대한사회복지회50년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숙고 끝에 모든 고아들의 입양을 담당하는 단체의 설립을 선택했다(인용, p.18, 나눔, 『나눔, 그 아름다운 삶: 대한사회복지회50년사』). 그리고 CPS는 보건후생부 산하 분과로 설립되었다.

책임자는 정부 기관 아동복지과장인 홍옥순이었다(출처: p.19, 나눔, 『나눔, 그 아름다운 삶: 대한사회복지회50년사』).

위는 대한사회복지회의 50주년 기념 출판물 『나눔 그 아름다운 삶: 대한사회복지회50년사』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이 50주년 기념 출판물은 한국 정부와 한국의 입양 프로그램 시행 간의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외입양과 한국입양사업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보건후생부가 관여한 정부 착수 사업으로 최초 책임자는 홍옥순 당시 정부 산하 아동복지과장이었습니다.

SWS/KWS 문건에 따르면¹ CPS가 입양에 착수했으나 인력과 해외입양 경험 부족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홀트씨 양자회(Holt Adoption Program, 현 홀트아동복지회, 이하 홀트)는 미국의 양부모와 “혼혈 아동”을 연계하는 솔루션임을 자처하였고, 국내에서 CPS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 기관인 CPS는 홀트를 활용해 미국에서 양부모를 찾고, 홀트는 CPS를 활용해 대리 입양(proxy adoption)을 하기로 동의하게 됩니다.²

SWS/KWS에 따르면 혼혈아들은 미군 기지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¹ P. 19, The 5 Decades of SWS: Since 1954 to 2003

² P. 19, The 5 Decades of SWS: Since 1954 to 2003

DKRG는 부청하 전 홀트 아동복지회장 (1972-1979년)과 면담을 했습니다.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되었으며 덴마크와 한국의 TV 방송국에서 모두 촬영되었습니다. 89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을 첨부(Appendix 2)합니다.

부청하 전 홀트 회장의 발언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 홀트의 역할에 상호 조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부청하 전 회장은 자신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만났으며 혼혈아동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이후 혼혈아동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힙니다.

또한, 2022년 9월 13일 신청서 접수 시, DKRG는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해외입양 개입을 보여주는 추가 문서도 제출하였습니다.

DKRG는 이들 문서가 진실화해위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 보완서에 첨부된 Appendix 3 문서를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ppendix 3 문서는 정부 내부 문서로 한국 정부의 역할과 구체적인 해외 입양 관리를 직접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는 당시 한국 정부가 해외입양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해외 입양 수요자와의 매칭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트와 협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한국 정부가 입양 기관의 운영을 입양 절차의 구성 요소까지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0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입양기관들과 한국 정부 간의 협력에 의한 인종청소 가능성 조사

위 3.0절에서 기술한 한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국제법 위반이자 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인종 청소이나 특정 집단 제거에 대한 논의가 한국 정부 내에서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DKRG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국제법에서 별도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CPS/SWS/KWS에 따르면 1954년 한국 정부는 최고통치자인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혼혈아동을 대상으로 해외입양에 착수했습니다. 혼혈 아동은 "단일민족의 단일국가 (일국일민주의)"이라는 국가정책 아래 흑인 또는 유색인종의 자녀³ 등 여러 인종적 배경을 가졌던 아동을 지칭합니다.

인종 청소란 특정 지역 내에서 인종적 동질성을 만들려는 의도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종 또는 인종 집단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민족 집단의 직접적인 학살뿐만 아니라 특정 인구 집단의 추방 또는 이주도 해당됩니다. 또한 특정 민족 집단을 약화시키거나 피난가게 만들어 강제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포함됩니다.

인종 청소는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4.1 인종 청소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CPS/SWS/KWS의 연감인 『나눔, 그 아름다운 삶: 대한사회복지회50년사』에서 밝히듯,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단일민족의 단일국가 일국일민주의" 정책에 대한 개인적 신념은 "전쟁고아 보호소"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했었습니다.⁴

이승만 대통령은 이 아이들이 한국 특유의 단일민족 사회에서 잘 지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은 "혼혈"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⁵

실제 전체 전쟁고아 중 혼혈아의 비중이 압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⁶ 위와 같은 이유로 CPS가 설립되었으며, CPS는 당시 보건사회부 산하의 정부 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즉, CPS는 "혼혈" 아동 문제 해결이라는 고정적인 업무를 가진 정부 직속 단체였습니다. 이후, CPS는 입양기관인 SWS로 명칭을 바꾼 뒤 현재 KWS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혼혈"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킬 수 있도록 입양기관인 홀트와 함께 협력 하였습니다.

홀트는 이에 대해: "혼혈 아동과 그 생모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 아이들 중 일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다"⁷

"한국 정부는 단일인종 사회에 적응을 못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입양을 확대했다".⁸

홀트의 역할과 한국 국가의 역할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상호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홀트의 "사랑", "기독교적 가치", "도움"이라는 특유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홀트가 "혼혈" 아동을 표적으로 한 한국 국가의 정책에 자선단체로 참여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³ P. 17, The 5 Decades of SWS: Since 1954 to 2003

⁴ P. 17, The 5 Decades of SWS: Since 1954 to 2003

⁵ P. 17, The 5 Decades of SWS: Since 1954 to 2003

⁶ P. 18, The 5 Decades of SWS: Since 1954 to 2003

⁷ P. 121, Holt Children's Service, Inc 50 Years

⁸ Quote, p. 121

따라서 홀트는 한국 국가 기관인 CPS가 인력이 부족⁹하고 한국 정부가 홀트의 요청에 동의했기 때문에 "혼혈"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정책의 운영자로 한국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아동을 "구호"하는 신화로서 한국해외입양은 서술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한국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주로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위에 기술한것과 같이,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혼혈아동"들을 해외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도였음이 명백합니다. 빈곤, 필요나 사회적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한국 특유의 단일민족 사회에서 잘 지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단일 민족의 단일 국가"의 개념 때문입니다.¹⁰

이는 한국해외입양이 "도움" 혹은 "인도적 지원"이라기 보다는 추방으로 정의해야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DKRG와 부청하 전 홀트 아동복지회장과 2시간 30분간의 면담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장이 되서는 전국 시설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혹시 부모가 없고 입양을 국내 입양이든 해외 입양이든 가고 싶은 애를 홀트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하면 혼혈아 하프하프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외국인이 많이 있지만은 제 기억으로 60년 당시에는 외국인이 라는 거는 미군 군인 아니면 혼혈아뿐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땐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박대통령을 청와대에서 가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어요. 내가 미국 같은 데나 가서 약간 공부하면서 봤더니 미국 같은 데는 시카고 공항이나 미국 공항에 흑인이나 백인이 구두를 닦아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참아요. 만약에 애들이 한국에 남아서 성장해서 애들이 서울역이나 김포공항에서 구두를 닦을 때”

“전쟁 때문에 전쟁 고아들이 구두 닦이 한다는 말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설에다 다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혹시 시골이든 어느 시설에서 혼혈아를 데리고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 애들을 입양 보낼 테니까 홀트에 신청해달라고.”

“그참아요. 만약에 애들이 한국에 남아서 성장해서 애들이 서울역이나 김포공항에서 구두를 닦을 때 6.25 전쟁 때문에 전쟁 고아들이 구두 닦이한다는 말이 나올 거 아니냐, 이런 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설에다 다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혹시 시골이든 어느 시설에서 혼혈아를 데리고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 애들을 입양보낼 테니까 홀트에 신청해달라고. 67년도 당시기 때문에 6.25 전쟁 때 혼혈아 된 아이가 벌써 13살 10살 15살 나이가 많아졌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나이 많은 아이는 입양 꺼려했어요.”

“아메리카 오랄 유럽. 네네. 그래서 가장 원하는 거 연령이 원 이얼즈월드. 5 월드. 그런 사이 애들만 입양을 많이 원했어요.” 청와대로 가시고 박정희 대통령과 면담하실 때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하셨을 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어떻게 부 오케이. 굿 아이디어. 좋은 안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보고 거기서 켜 선이 뭐냐면 이런 큰 아이들. 에이지가 15세 16세 17세 애들 안 데려가잖아요. 입양이 안 돼요. 그럼 미국에는 호스트 케어.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은 입양은 안 하지만은 다른 나라 아이들 그 나라 아이들 호스트 케어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부청하 전 홀트 아동복지회장과 2시간 30분간의 면담 녹취록 전문은 Appendix 2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⁹ P. 19, The 5 Decades of SWS: Since 1954 to 2003
¹⁰ Quote, P. 17, The 5 Decades of SWS: Since 1954 to 2003

부청하 전 회장은 1970년대 적어도 두번 청와대와 직접 방문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첫 번째는 바다홀트 - 홀트 창립자 부인-의 영예수예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해 박정희 접견, 두 번째는 1976년 입양아동들과 함께 국무총리 김종필 접견). 이와 관련한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현재 사진과 문서로 남아있습니다.

4.2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청소 가능성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인권침해 조사 요청

- 1) DKRG는 한국 "혼혈" 아동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요청합니다. 한국 정부와 입양 기관 모두에서 이를 시사하는 명확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 2) DKRG는 한국 "혼혈" 아동에 대해 인종 청소에 준하는 행위를 수행한 입양 기관의 역할을 조사할 것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요청합니다.
- 3) DKRG는 소위 "단일 민족의 단일 국가" 정치에서 한국 국가의 역할을 조사할 것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요청합니다.

5.0. 아동 절도 및 친부모의 양도서류 미비 사례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된 DKRG 사건 중에는 입양 기관인 홀트와 한국사회봉사회 (이하, KSS) 에 의해 저질러진 아동 절도 사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는 친권자의 포기 문서가 없습니다. 포기 문서는 자녀를 양도하고 입양에 동의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최소한으로, 입양 기관은 원래 보호자(생물학적 부모 혹은 친권자)의 입양 동의와 허가를 받아 아동을 양도받았다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당시 한국의 입양법과 민법에서 모두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입양기관이 아이를 적법하고 적절하게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DKRG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한 300개가 넘는 사례 중 어느 것도 법적으로 입양 기관에 아동이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친부모와 재상봉하고 있습니다. 친부모가 들려주는 입양경위는 입양기관의 서류에 나오는 입양경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불일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서류에는 입양인들이 고아로 표기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가족이 생존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우 염려스러운 많은 사례에서, 시설에서는 심지어 거리에서 어린이를 노골적으로 납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빌 (Bill)의 사례”가 있습니다. 빌은 DKRG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1976년에 나는 일곱 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전 근처에서 부모님과 아마도 3 형제와 함께 외딴 벼농사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수확 후 어머니와 나는 시장에서 농산물을 팔기 위해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있는 동안 낯선 남자가 나를 도시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수도도 전기도 없는 시골마을에서 살았다. 아파트 현대적인 가구, 냉장고 등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와 함께 저를 아파트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그 남자가 돌아와 나를 대전시 성실아동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심각하게 트라우마가 생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를 위해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나를 고아원에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가 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짜로 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홀트가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부모 입양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미국의 남성 사업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76년 12월 13일에 저는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된 다음날 부터 저를 자기 침대로 데려가 성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6년 동안 계속되었다. 내가 13살 되었을때, 나는 그와 싸워서 밀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나는 또한 침실 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딱 맞는 벨트와 청바지를 입고 침낭에서 자고 베개 밑에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학대가 멈췄습니다.

약5년 전, 나는 처음으로 입양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제서야 모순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 내 파일에는 내가 1977년 2월에 입양되었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홀트에서 공식적으로 입양서류를 제출하기 거의 몇 달 전에 아버지가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가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내가 두 개의 고아원에 있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아니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파일에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홀트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처음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속하여 질문하자, 홀트 사회복지사는 나의 어머니가 도시에 살고 재봉사로 일하는 독신 여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가난해 나를 시설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입장을 둘러싼 거짓말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구에게든 내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나는 거의 평생 동안 친가족을 찾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 부정하거나, 억누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입양인으로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중최악은 나를 아무도 원치 않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처럼 매일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고통이 한 아이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너무 작게 생각하는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나는 어떠한 형태의 보복이나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리워 하는만큼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를 도우시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는 “정경숙” 사례입니다.

정경숙은 1970년 입양기관인 홀트를 통해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입양되었습니다. 정경숙씨는 DKRG가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 해외입양의 인권 침해와 입양 사기 및 서류 위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입양인 중 한 명입니다.

정경숙의 입양서류에 따르면 그녀는 고아입니다. 그녀는 본인이 호주인 단독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양 서류에 따르면 그녀는 1968년 생입니다.

홀트가 제공하는 이 두개의 정보는 (다른 정보와 함께)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경숙 씨는 고아가 아니었고 1969년에 태어났습니다. 입양도 가족이 자발적으로 보낼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정경숙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경숙은 196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으로 곧 죽었고 그녀와 그녀의 세 순위 형제들은 아버지 손에 맡겨졌습니다. 정경숙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병에 걸렸고 아버지는 지방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경숙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정경숙을 마지막으로 본것입니다. 아버지는 다시는 정경숙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경숙의 아버지가 몰랐던 사실은 병원 측이 입양기관 홀트와 연락을 통해 그녀가 해외입양으로 보내졌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코 정경숙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970년, 정경숙은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 한 입양가족이 있는 노르웨이에 도착했습니다.

1974년에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정경숙의 10살된 언니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아버지가 없을때 세 자매가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언니가 정경숙을 꼭 찾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경숙을 잃어버린 일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7년 그녀는 한국의 친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그녀는 언니로부터 죽을 때까지 몇 년 동안 아버지가 한국의 모든 고아원에서 정경숙 찾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987년에 죽어가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경숙이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녀는 2017년에 아버지와 묘를 찾아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찾아다니고 끝까지 기억해 주신 아버지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세 번째 예는 “헬레(Helle)의 사례”입니다.

헬레는 KSS로부터 그녀의 배경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편지 (부록 5)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KSS는 이에 대해 사과하며 “사실 입양 절차를 위해 꾸며낸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레의 경우는 특히 KSS 조사관련 중요한데, 고아원 (남광 사례)이 아니라 한국회봉사회가 직접 정보를 조작하는데 관여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는 KSS가 입양인에 대한 조작된 배경 정보를 주도하여 만들어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헬레는 그녀의 어머니가 KSS에 아이를 인계 한 것을 후회하고 KSS에 인계 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도 채 안되어 아이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었다고 설명합니다.

KSS는 어머니에게 헬레가 이미 입양을 위해 해외로 보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헬레는 여전히 한국에 있었고, KSS의 보호를 받았지만 헬레의 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헬레에 따르면 그녀는 어머니가 KSS에 헬레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했을때로부터 2개월 이상 한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KSS는 헬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KSS는 헬레 친모의 입양 취소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입양은 무효입니다.

5.1 홀트와 KSS의 아동 유괴 및 절도 사건 조사 요청

홀트와 KSS에 의해 유괴되거나 절도 당했다는 입양인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습니다.

아동 유괴와 절도 사건 수는 진실해화위원회에 제출된 사건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 유괴와 절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입양기관 홀트는 아동 절도 사건 관련해서 두드러집니다.

아동 절도 사건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신고와도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맥락에서 입양기관 홀트도 상당히 두드러질 정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 사건들은 입양 기관 홀트의 보호하에, 또는 입양 직후 발생했습니다.

이는 홀트의 주요 직원들이 소아성애자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늦은 1988년에 입양된 사례인 “Anka 케이스”를 통해 이것이 강조 되며 입양인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저는 9살의 나이로 1988년에 입양되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새 가족으로 가기 전에 저는 몇 달 동안 서울에 가까운 홀트의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그 몇 달 동안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고 경험해야 했습니다. 저와 제 친동생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은 홀트고아원에서 일하는 감독관들로부터 끊임없이 밥을 굶어야 했고, 구타와 굴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끔찍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아원의 감독관 중 한 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5.1.1 홀트의 전(前) 회장에 대한 성적학대 혐의

Holt International의 회장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은 홀트 조직이 피소된 소아성애자가 최고위직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6년 10월 9일자 시애틀 위클리 뉴스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1991년에 11세부터 3년간 1970년대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전직 복사(服事)의 소송 제기는 취하되었지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Cousineau는 2003년

재정적 문제로 시애틀의 직위를 사임하고 Oregon에 있는 세계적인 아동 입양 기관인 *Holt International*의 회장이 됩니다. *Seattle Children's Home* 관계자들은 *Cousineau*를 고용했을 때 그가 고소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고, 홀트 관계자들은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대외적 압박에 *Cousineau*는 작년, 입양기관에서 사임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은 1970년대에 11세부터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또한 고소하고 있습니다. *Cousineau*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두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2004년 4월 28일 freelibrary.com의 뉴스 기사입니다:

"Eugene에 본사를 둔 *Holt International Children's Services*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입양 기관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제 시절 11세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두 달 만에 사임했습니다.

홀트가 고용한 독립 법률 회사는 1994년 소송에서 *David Cousineau*를 상대로 한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홀트가 화요일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이 직원, 기부자 및 외국 파트너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인해 기관은 *Cousineau*의 관리 및 회장의 능력이 손상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Larry Cahill* 이사회장이 화요일에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죄라고 믿습니다,"라고 *Cahill*은 그의 보스턴 법률 사무소에서 전화 인터뷰로 말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큰 공헌을 했고 계속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혐의의 성격과 *David*이 이사회와 홀트에게 사전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을 이끌 능력이 손상되었습니다."

1년 전에 고용되어 3월 1일부터 유급 휴가를 받은 *Cousineau*는 화요일에 홀트를 계속 이끌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사임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라고 그는 *The Register Guard*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홀트에서 계속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러하지 못할 뿐입니다."

*Cousineau*는 아내 *Elisabeth*와 함께 *Eugene* 지역에 머물 계획이며 위험에 처한 아이들과 가족들이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머물면서 제 일을 계속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이 비난에 수반된 악명입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것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Cahill*은 홀트가 지난 수요일로 소급하여 월요일에 사표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홀트 이사회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Eugene*에서 만나 임시 이사 선임과 상임이사 및 CEO 선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Cousineau*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교구에서 18년 동안 사제로 일하다 사제직을 떠나 결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교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193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교구의 210명의 사제, 부제, 형제, 세미나, 그리고 1명의 가짜 신부 중 한 명입니다.

대교구는 아동 성학대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소된 사제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1994년 민사소송에서 한 남성이 *Cousineau*가 11살 때 자신을 성추행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소송은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기각되었습니다.

여전히, 10년 된 혐의는 홀트가 기부자들과 다른 나라의 파트너들과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Cahill*은 말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혐의들은,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그들을 경계하게 만듭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우리가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서 1994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특히 비극적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가 그 혐의들이 재판에서 뒷받침될 가능성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소송은 *Cousineau*가 고용되기 전에 실시된 범죄 경력 조회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다. *Cousineau*는 자신이 성적자로 일했다고 밝혔지만 소송이나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다.

*Cahill*은 "그것은 정보를 밝히지 못해 심각히 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뢰 문제가 생겼습니다."

*Cousineau*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당시에 소송 사실을 공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비난은 거짓이었습니다. 사라졌어요."

Long Beach 거주자 *Timothy McDonnell*은 최근 *The Register-Guard*에 1970년부터 73년까지 발생한 학대로 1992년 *Cousineau*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부 학대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요건 때문에 기각됐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입법부가 개설한 창구를 이용한 약 500명의 캘리포니아 주민 중 한 명입니다.

*McDonnell*은 대교구를 상대로 *Cousineau*는 이름을 붙인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Eugene 지역에 오기 전에, *Cousineau*는 어린이, 청소년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기관인 *Seattle Children's Home*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및 동유럽의 난민 가족들의 협조를 포함한 연간 4천만 달러의 예산을 가진 기관인 남부 캘리포니아의 가톨릭 자선 단체를 운영했습니다.

*Cousineau*는 1972년에 서품을 받았으나 대주교와 의견이 맞지 않고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입양인들은 소위 고아호적 (한국에서는 기아호적이라고도 불리나 본 문서에서는 고아호적으로 통일)이나 고아가족등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서에는 아동의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란이 공란으로 남겨진 채 본인이 호주인 단독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명칭: 일가창립 단독호적).

이 고아호적은 한국 신분 등록 시스템에 있는 입양인의 유일한 신분증이나 등록증이며, 동시에 한국 시민권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고아호적을 통해 입양인들의 한국시민권 박탈이 이루어집니다.

이 특별한 고아 호적은 입양 기관에 의해 준비되고 한국의 가정 법원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국적 박탈은 입양인이 수용국에 도착한 지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입양기관이 대한민국 법무부에 요청하고 이뤄집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입양인을 위해 만들어진 이 특별한 호적은 오늘날까지 한국의 공공 기록에서 입양인이 존재했다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화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입양아들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입양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등록번호와 출생신고 없는 입양인은 한국기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서 유일하게 입양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이 호적/고아 호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인의 친부모가 입양 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 입양인이 친가족 호적에 등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친가정이 아이를 등록하고 가족의 호적에 기입한 경우에도, 입양 기관은 여전히 고아 호적을 준비하여 아이는 입양 보내지기 전에 사실상 두 개의 호적을 갖게 됩니다: 아이의 친부모가 아이를 기입한 호적 그리고 입양기관이 가정법원을 통해 아이를 가장으로 등록시킨 두 번째 호적입니다.

호적 문제는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한국 국적과 관련된 만큼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입양 기관과 한국 국가가 입양 대상 아동들을 위한, 다른 한국 시민들과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로 입양된 사람의 케이스를 예로 들자면, 이 입양인은 한국에 2년간 의무적인 군 복무를 하라고 통보 받았는데, 친부모가 만든 호적과 입양기관이 만든 고아 호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입니다.

6.1 대한민국에서 해외로 보내진 입양인의 국적에 관한 조사 요청

- 한국 입양인들은 어떻게 출생신고 없이 한국 시민이 되었는가?
- 왜 한국 시민권을 가진 입양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는가?
- 친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어 친가족의 호적에 등록되어 있던 입양인의 경우 왜 입양기관은 고아호적을 따로 만들어내었는가? (이 고아호적을 사용함으로써 입양인의 친부모 정보 접근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 한국 해외 입양인들이 군복무에 소집된 사례는 얼마나 되는가?

7.0 입양 기관의 입양 문서 위조 및 이중 허위 복수기록 보관에 관한 자백

30여년 동안 입양인들 사이에 입양인들의 배경 정보가 담긴 입양 서류들이 입양기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위조되었다는 설이 무성했습니다.

2022년 8월 23일자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된 DKRG 원본 조사 의뢰 문건에 DKRG가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입양인들의 사례와 서류가 점점 더 많이 들어오면서 중요한 정보 또한 많이 입수 할 수 있었고 입양기관의 관행과 입양절차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DKRG는 이로써 입양기관 홀트와 KSS가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양서류를 위조했다는 증거와 중요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입양인의 사례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7.0.1 Example 1 – case number: 004_20220815 Louise Kwang

"덴마크 입양 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아로 부산의 길거리에서 발견. 그 후 부산 남광아동복지원에 인계. 서울 KSS를 거쳐 덴마크로 보내짐.

하지만, 이것은 더 빠르고 그리고 더 쉽게 입양될 수 있도록 조작된 정보입니다 - 저는 고아가 아니었고 부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2016년에 KSS에 연락해서 제 원본 입양 서류 원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KSS답장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정보를 100% 믿지 못합니다.

이 새로운 정보를 갖고 저는 2017년에 직접 찾기로 나서고 영화 "Traceless" [2019, D. Holland 감독]마냥 친아버지를 찾는데 성공합니다. 다 얘기 하자면 길지만, 간략하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한자로 원본문서에 적혀 있었고 다행히 제 통역사는 한자를 읽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KSS가 이메일에 언급한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전달한 우체국 직원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아버지는 2020년에 암(및 기타 질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총5번(2017년 1회, 2018년 3회, 2019년 1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수 년 전의)뇌의 혈전으로 인해 그는 반신불수 상태였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말을 못 했으며, 일종의 요양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는 1976년 이후로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해서는 KSS에서 정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아버지를 찾은 이듬해) 당시 11살이었던 제 딸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다시 한 번 KSS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KSS 직원이 저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놓고 있는 척하고 입양 서류를 찍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한국어 통역사는 제 친어머니의 이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과 그 나이(입양 당시 나이로 따지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명이나 있는지 서울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1명.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방문하며 그녀가 (입양 서류에 언급된) 서울 지역에 살았던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그녀가 제 어머니가 맞다면 그 과거를 그 자리에 언급할 염두를 내지 못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그녀의 동의 없이는 주소를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제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유일한 것은 전라북도(주민이 거의 200만 명에 이르는 지방!)에 어머니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어머니와의 만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게 짧은 버전이었어요.

- 제 존재의 기초가 거짓말이었다는 것 (고아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제 나이와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것)
- 친아버지를 만나고
- 그와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그가 돌아가고
- 코로나로 인해 장례식에 조차 가지 못하고, 이런 것 조차도 이제 덴마크인이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서 그랬다는 것,
- 친어머니를 찾는 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뿌리를 알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 특히 관련 정보가 실제로 있으면 더더욱이요.”

2016년 12월 21일, KSS는 입양인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선, 저는 당신의 영어로 작성된 입양 파일에 있는 오류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입양을 위해 부산 남광어린이집에서 KSS로 이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단지 입양 절차를 위해 만들어진 내용이고, 이제 저는 원본 파일에 쓰여진 당신의 진짜 입양 배경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입양 절차를 위해 만들어진 내용이고,” 입양 서류 위조에 대한 순수한 고백입니다.

7.0.2 Example 2 - Case number 188_20220911_Helle Jiyeon Fukamizo

이 사례에는 입양인이 자신이 고아였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그녀는 고아가 아니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이 입양인은 2016년 10월 28일 KSS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습니다.

“저는 당신의 생각을 찾아달라는 당신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이 편지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이 편지가 당신을 잘 찾아갔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는 당신의 입양서류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입양 절차를 위해 지어졌으며 입양 이전의 배경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일 검토를 신청하셨으니 KSS에서 입양을 할 당시 파일에 기록된 배경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지 입양 절차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입양 서류 위조에 대한 순수한 고백입니다.

추가적으로 입양인은 그녀의 친모가 KSS에 인계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아이를 되찾아 달라고 요구하려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KSS는 거절하고 친어머니에게 아이가 이미 입양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친모들의 반환요구 이후 수개월 동안 KSS 관리 하 한국에 있었습니다. 입양 회사 KSS는 친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친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7.0.3 Example 3 - case number 152_2022_0910_Malene Weihe

입양인의 입양과 배경문서를 체계적으로 위조한 증거.

이 사례는 입양인의 배경정보와 입양서류의 위조에 대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KSS의 관리자인 김씨가 보낸 이메일에서 KSS가 입양 과정에서 표준 양식을 사용했으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서류상 고아가 된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입양절차를 위해 표준서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생부모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아이가 고아인 것처럼 서류작업이 이뤄졌다”는 KSS 회장 김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위KSS의 인용은 입양인 개인 한 명 뿐만 아니라 KSS의 일반적인 입양 절차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중요합니다.

그 뜻은 즉시, 모든 KSS 사례가 표준적으로 위조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KSS에서 전세계로 보낸 20,000명의 입양인이 해당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1. KSS의 이중 입양서류 시스템 (허위 입양문서와 실제 입양 문서)

위의 섹션 7.0.1, 7.0.2 및 특히 7.0.3에 설명된 대로 위조 입양 정보의 승인에 대한 세 가지 예가 제공됩니다.

즉, KSS에는 수령국의 입양인과 양부모에게 제공된 일련의 정보가 있으며, 동시에 따로 자체적으로 보관한 실제적이고 진정한 정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는 입양서류가 두 개의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관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입양을 위해” 조작된 서류와, 다른 하나는 실제 정보가 들어간 서류로 구성됩니다.

신원 전환 사례라고 하는 복잡한 사례에서 이중 입양서류 시스템이 있음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덴마크의 '토나 사건'과 '안아 사건'에는 두 가지 정체성이 보입니다.

입양과정과 관련하여 양부모가 수령하고 입양인에게 양도되었다는 공식 문서가 있으며 그리고 입양 부모와 입양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및 비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안야 사건에서 죽은 소녀의 사진



실제 입양 파일에 있는 실제 안야의 사진

이 문서들은 "토나 사건"과 "안야 사건" 모두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진짜 사건 문서에는 가짜 사건 번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안야 사건"에서 입양인은 실제 아카이브를 직접 보았습니다. 마이크로필름에 있는 문서로 구성된 아카이브로 설명되며, 실제 입양 기록과 허위 입양 기록 사이에 등록 참조가 있습니다.

즉, 입양인은 KSS에 물리적인 이중 아카이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환 사례에서 "Birthe 사례" KSS는 입양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This is in response to your request to search for your birth family and I would like to share the information on your adoption background first because the information that you were from Nam Kwang Children's Home in Pusan City was just for the official adoption procedure at the time. Your real background is that you were from a midwife's clinic in Seoul where you were born, not from Pusan City, and the clinic told us that you were born the 3rd child to your birth parents and had 2 older sisters but the economic condition was so bad that your birth parents asked the clinic for your adoption. So you were placed to KSS for adoption.

But in 1996 we got contact from your birth family for you and had some more information on your background. And we sent a request letter to Adoption Center in Denmark but had no response, so would send another request on the recent request from your birth mother.

According to the birth mother, you were born the 6th child to your birth parents and had 5 older sisters but they decided on your adoption because of poverty and asked the clinic where you were born for your adoption. Now all family is doing well in good health even

입양인에게 제공한 "[입양인의] 입양 배경" 공식 정보는 거짓이었습니다. 입양인에게 주어진 정보는 "당시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위한 것이었다. 당신의 실제 배경은..."

7.2. 홀트의 이중 입양서류 시스템

7.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KSS만이 이중 입양서류 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DKRG는 최근 덴마크 입양 기관 DIA로부터 입양 기관 홀트가 당시 입양 절차의 일부로 이중 입양서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0월 14일 회의에서 DIA 경영진이 DKRG 공동대표에게 제공한 정보입니다.

DIA는 DKRG와의 전화 통화에서 홀트에 이중 아카이브의 존재에 대한 정보를 반복합니다.

DKRG는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하지만 홀트와의 첫 만남은 그게 아니었나요? 70년대와 80년대의 프로세스와 규칙이 정확히 그 당시 방식이 아니었나요?"

DIA의 답변: "네, 맞습니다. 그들은 [홀트]에 매우 정직하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레지스터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입니다. 더 나아가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DKRG에게도 약간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양 기관 홀트의 모든 입양의 신뢰성과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정보입니다.

입양 기관이 홀트는 한국 해외 입양 사례의 약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DKRG는 진실화해위원회에 홀트의 문서 위조가 어느 정도로 만연하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DKRG는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 홀트의 이중 입양 문서 시스템과 문서고의 존재를 인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주의는 진실화해위원회가 홀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위조된 기록 보관소가 아닌 원본 및 실제 기록 보관소를 포함하는 기록 보관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홀트에 관한 가장 큰 문제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중된 아카이브의 존재는 획득한 것이 위조된 정보가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DKRG는 홀트의 위조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가 포함된 위조 및 원본 아카이브를 조사에 포함할 것을 진실화해위원회에 권장합니다.

DKRG는 홀트가 입양과 허위 기록물에 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홀트의 비행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혐의 문서를 없애려 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DKRG는 홀트가 입양인의 원본 정보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것을 우려하여 입양인의 원본 및 원본 정보를 보호해 줄 것을 진실화해위원회에 요청합니다.

8.0 한국 입양 서류의 문제 - 법적 후견인 신청, 고아 호적 설립 및 고아 호적 개정에 따른 문제

입양인의 경우 입양 문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DKRG는 자신의 입양 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입양인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당국도 입양 서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KRG는 DKRG의 대표자들이 서류 준비를 감독한 한국 당국에 입양 서류를 제출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서류가 다른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서류와 유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주된 입양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1) 입양 기관에서 아동을 언제 받았는지 기재한 등록 문서
- 2) 접수당시 입양인과 입양인의 건강상태를 설명하는 의료 및 건강 문서.
- 3) 입양 기관에서 설립한 고아 호적으로 미성년 입양인이 알 수 없는 것으로 명명된 부모와 함께 가족의 가장이 되는 경우
- 4) 지명된 개인을 아동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법적 후견인 문서
- 5) 한국사외봉사회 입양의 경우 입양 기관이 후견인에서 해제되는 진술서도 있습니다.
- 6) 아동에게 입양을 위한 말미가 주어진다든 진술

이 문서는 법원, 지방자치단체 (예: 시장, 구 및 주민센터)와 같은 한국 당국에서 서명합니다.

이 일련의 문서에 법적 의미가 주어지거나 의미가 있는것 처럼 보인다면,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아동이 입양 기관과 처음 만나는 것은 입양 기관에 등록되고 등록될 때인데, 이 경우 중 어느 경우에도 아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양 기관에 넘겨 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는 없습니다.

법적 방법은 자녀가 1) 자녀의 부모에 의해 입양될 목적으로 전달되거나 2) 아동이 버려진 아동이어야 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된 이 사건의 어떤 사건에서도 입양 기관이 입양 기관 이외의 입양 기관에서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모든 종류의 법적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징후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경우 자신의 회소 설명, 입양 기관의 자체 설명은 거의 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허위 정보의 많은 문서를 기반으로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미아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을 미아로 확실하게 규정한 문서는 기관 자체의 설명 외에는 없는데 이것이 본인이 말했듯이 정당한 이유로 의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입양인의 많은 증언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입양인은 그들이 버려진 아동이라고 들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누가 합법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돌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 기관으로서 입양 기관은 1차 보호 업무의 일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아동이 시설이나 위탁보호를 받는 동안 입양기관이 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입양 사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동이 입양기관의 보호를 받는 기간 중 매우 마지막 시기에 법정대리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경우에 법적 후견인은 입양기관 자체의 신청에 따라 임명되며, 모든 경우에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되는 것은 입양 기관의 책임자 (회장)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동이 입양 기관에 체류하는 동안 법정대리인은 마지막 체류기간에 임명됩니다. 이는 아동이 법적 보호자를 부여받기 전에 입양 기관에서 입양 준비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양 기관은 그들이 인계받은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지 않거나 출생 등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합니다.

입양 기관은 법적 후견인이 없이, 아동을 위한 고아 호적을 만들어 아동을 단독호주 (자신의 호주)로 배치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상인 것으로 보고합니다.

따라서 아동은 한국 국가 등록부에 고아 호적으로만 등록됩니다.

입양 기관의 입양 준비 과정에서 아동의 이름, 나이, 고향 및 기타 식별 정보가 변경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보는 현재 아동권리협약 제7조 및 제 8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만 당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원 정보입니다.

1966년 한국 고아입양특례법 제5조 4항:

“입양알선기관은 그가 알선한 고아가 외국인의 양자가 된 후에도 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상시 파악하여야 하며 당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확인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입양기관은 중재한 고아가 외국인입양이 된 후에도 그 신원을 확인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8.1 법적 후견인

미성년 아동과 관련된 법적 후견인에 대한 일반적이고 가장 광범위한 정의는 아동의 복지와 최선의 이익을 돌보는 결정을 내린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법정후견인은 미성년 아동에 관한 경우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쌍방이 공동으로 자녀의 원래 후견인을 대신하는 자연인입니다.

법적후견인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관적으로 미성년 아동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인 후견인으로 임명됩니다.

법적후견인은 독립적인 제3자가 임명되어야 하는데, 이는 후견인이 아동의 이익과 복지를 보장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에 관계없이 아동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된 사례 뿐만 아니라 DKRG가 알고 있는 모든 입양 사례에서 법적 후견인은 항상 입양기관의 책임자 (회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적후견인과 입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100% 동일시되고 입양기관의 업무와 연계된 거액의 금전과 기부금이 존재하는 등 자신/기관의 이익과 직접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법정후견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위의 사례를 통해 각 개별 아동의 입양 사례에서 입양 절차는 입양 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청하여 부여한 법적후견인이 임명되기 전에 입양 기관의 양육권에서 시작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법정후견인의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처럼, 아동의 진정성 있는 관심과 이익을 돌보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8.2 입양 문서에 대한 우리의 결론

한국의 법 어디에도 입양 법적 후견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문서를 작성한 예는 없습니다. 이는 후견 문서 자체가 독립적인 법적 효력이 없지만, (예를 들어) 아동 수령국 당국에게 입양 절차를 합법적것 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용되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이 가정이 맞는다면, 법적 후견인 문서는 수령국가와 수령국가의 양부모가 입양이 받아들여졌다고 믿도록 오도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입양 기관의 또 다른 의심스러운 조치입니다. 아동의 원래 보호자로부터 입양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 (친권자)의 완전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9.0 “바뀌진 신분” (아동 바꿔치기) 사례

바뀌진 신분 사례의 경우 한 입양인이 다른 입양인의 신분으로 보내지는 경우입니다.

바뀌진 신분 사례는 주로 KSS에 집중되어 있지만 홀트에서도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한국사외봉사회의 경우, 바뀌진 신분 사례는 입양대기 중의 아동이 사망한 경우 다른 아동이 사망한 아동의 이름과 신분으로 입양된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입양 서류, 신분증 정보, 이름, 나이 및 정부 여행 허가 서류가 포함됩니다. 죽은 아이의 사진조차도 입양인이 보내지는 입양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양인들은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의 배경을 검색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입양인들은 자신이 평생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조된 신원이 죽은 한국 아동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매우 큰 충격입니다.

입양기관에서 신원 도용 사실이 적발되어 인정된 후에도 사망한 아이의 신원이 입양인에게 귀속되어 있어 입양 기관과 한국당국이 위조된 신원을 악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뀌진 신분의 입양인은 한국의 주민센터에 가거나 NCRC에 연락하거나 입양 후 서비스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만 죽은 한국 아동의 형태로 허위 신분으로 자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인 자신의 가짜 한국 신분을 자신의 신분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바뀌진 신분 입양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례에 참여하면 입양 기관에서 자신의 진정한 신원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의 DKRG 사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뀐 입양인은 입양기관에서 자신의 신분이 실제 신분이 아니며 신분이 죽은 아동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입양기관은 입양기관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입양기관에서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뀌진 신분의 입양인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분이 바뀌어진 입양인에게 행한 잘못이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9.1 부산 남광아동복지원, 해성보육원 그리고 백백합 보육원

많은 고아원이 신분이 바뀌진 입양인 사례에 연루됩니다.

남광아동복지원은 바뀌어진 신분, 위조 사례가 거의 동일하다고 간주될 정도로 사례가 많은 고아원 중 하나입니다.

입양 기관 KSS는 남광과 관련된 심각한 신분 범죄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사례와 관련하여 언급된 다른 곳은 해성보육원과 백백합 보육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KSS가 남광과 다른 고아원을 조직적으로 이용하여 아동의 신원을 위조하게 된 상황을 조사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10.0 사망한 아동

과거에 DKRG는 죽은 아동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죽은 아동들.

홀트의 입양 서류 검토와 관련하여 1970년대에 홀트에 고용된 수양모의 자녀 목록이 포함된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목록에는 문제의 수양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아동이 표시되고 목록에는 아동이 어디로 보내졌는지도 표시되었습니다. 예, 덴마크와 미국.

“만료됨”이라는 표시도 목록에 나타납니다. DKRG는 “만료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고 따라서 DKRG는 1970년대에 홀트의 전 복지회장 부청화씨를 만나기로 되어있던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TV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부청화 전 홀트아동복지회장은 “만료됨”은 죽었다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

인터뷰에서 부청화 전회장은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재임하던 기간에 하루 평균 8명의 한국 아동들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청화 전회장이상대가 정확하다면, 1972년에서 1979년까지 하루에 8명의 사망한 아동은 매우 높은 아동 사망률이며 이숫자는 입양기관인 홀트에게만 해당합니다.

부청화 전 회장은 자신이 직접 운전을 도왔고 홀트의 주소에서 사망한 아동들을 모은 것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아동들은 봉고에 실려 오늘날 홀트시티가 위치한 일산의 홀트단지로 옮겨져 묻혔습니다. 부청화 전회장은 자신이 아동들을 직접 운반하고 매장하는 것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부청화 전 회장에 따르면 아동들은 출생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사망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사망 아동에 대한 유사한 정보는 입양 기관인 한국사회봉사회에서 나온 것으로, DKRG는 KSS와 입양인 사이의 이메일 서신을 보았고 KSS는 KSS의 화장터에서 죽은 아동들을 화장하였고 유골은 서울의 한국사회봉사회 지역 뒤편 산에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신문이 바뀐 사례인”안자 사례”에서 입양인은 사망한 소녀의 신원 대신에 죽은 아동은 어떻게 되었고 입양인은 누구를 보냈는지 묻습니다.

이에 KSS는 죽은 소녀가 한국사회봉사회 화장터에서 화장되었고 재가 산에 흩어져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사회봉사회장 김씨는 입양인에게 아동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사회봉사회도 사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높은 사망자 수와 죽은 자에 대한 극도로 이상하고 유치한 대응은 독특하고 매우 혐오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DKRG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죽은 한국 아동들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청합니다. 홀트에서 죽은 아동들이 많다는 것은 방치를 나타내며 아동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아와 열악한 위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88년 “안가 사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988년 당시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DKRG는 홀트의 아동에 대한 설명과 아동의 상태가 과장되어 있으며 홀트의 다른 거짓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입양된 진실에 대한 연막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홀트가 당신 한국 정부와 공모해 인종, 장애, 부모의 혼인 여부등을 이유로 한국 아동들을 추방한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DKRG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입양 기관이 구금중인 사망 아동의 수를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중은 입양 기관과 한국 국가의 입양 프로그램의 희생자였던 사망한 한국 아동의 수와 이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